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 곽규택・백종헌・김희정

이헌승 • 주진우 • 김대식

박성훈 · 조승환 · 서지영

이성권 · 정동만 · 정성국

김도읍 • 박수영 • 조경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 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.

이에,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·신속·효율성을 증 대하고,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.

특히,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,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부산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,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(안제2조제1항, 제4조제9호, 별표 1 및 별표 11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48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0호),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3호), 「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4호) 및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5호)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특허법원"을 "특허법원, 해사법원"으로 한다.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해사법원의 관할구역: 별표 11

별표 1의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해사법원	부산광역시

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[별표 11]

해사법원의 관할구역

명칭	관할구역
해사법원	전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① 고등법원, <u>특허법</u>	제2조(설치) ① <u>특허법</u>
<u>원,</u> 지방법원, 가정법원, 행정법	원, 해사법원
원,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	
원(支院)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	
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관할구역) 각급 법원의 관	제4조(관할구역)
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	
따라 정한다. 다만, 지방법원	
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	
시·군법원을 둔 경우 「법원조	
직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및	
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	
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	
에서 해당 시·군법원의 관할구	
역을 제외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해사법원의 관할구역: 별표
	<u>11</u>